

수원호매실 A-7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♠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공사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
- ♠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·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
- ♠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**제출일시(2016.05.06)를 반드시 엄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**별도 기간연장 없음**)
- ♠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5.12예정)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대상 및 일정

■ 공급대상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호매실지구내 A-7BL 공공분양주택 700호

| 블록 | 공급유형 | 전용면적(m ²) | 주택형 | 건설호수 | 입주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A-7 | 공공 분양주택 | 59 | 계 | 700 | '18.3 (예정) |
| | | | 59A | 544 | |
| | | | 59B | 156 | |

■ 일 정

| 구 분 | 일 자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주자모집공고 | 2016.05.12(예정) |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|
| 접수 | 2016.05.18(예정) | 주택홍보관 방문접수(인터넷 접수 불가) |

- 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단지조감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입주자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, 주택홍보관 방문시 열람 가능합니다.

■ 분양금액 : 미정 [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(2016.05.12 공고예정) 참조]

2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[2016.05.12(예정)]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인 세대원)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

| 추천대상자 | 청약통장 구비여부 |
|---|---|
| · 지자체철거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 | 청약통장 필요없음 |
| ·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우수선서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남북피해자 |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|

- 무주택세대구성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)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[2016.05.12(예정)]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

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]

「무주택세대구성원」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
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5.12 예정)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[당첨일로부터 3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)]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
-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(당첨일로부터 3월)내에 있는 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, 우리공사에 추천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 [2016.05.12(예정)]에 공사에 특별공급 방문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분만 당첨자로 확정·관리되며,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
- 신청주택의 동·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, 미계약, 미신청 동·호 발생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함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,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·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

3.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[2016.05.12(예정)] 이후 발급분**에 한함
- 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
■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(각 1통)

| 구비서류 | 구비조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특별공급신청서 | · 공사 소정 양식(접수장소 비치) |
|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 | ·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*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5.12)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** 단,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***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(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, 과거주소변동사항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|
| 가족관계증명서 | ·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|
|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| 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* 제출대상자 :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우수선수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납북피해자 |
| 신분증 | ·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포함) 또는 여권사본 지참 (배우자 신청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도 지참) |
| 도장 | ·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|
| 1층 주택 우선배정희망자 ^{주1)} | ·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(신청일에 신청접수장소에 비치) 및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|

주1)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[(2016.05.12(예정))] 현재 만65세 이상인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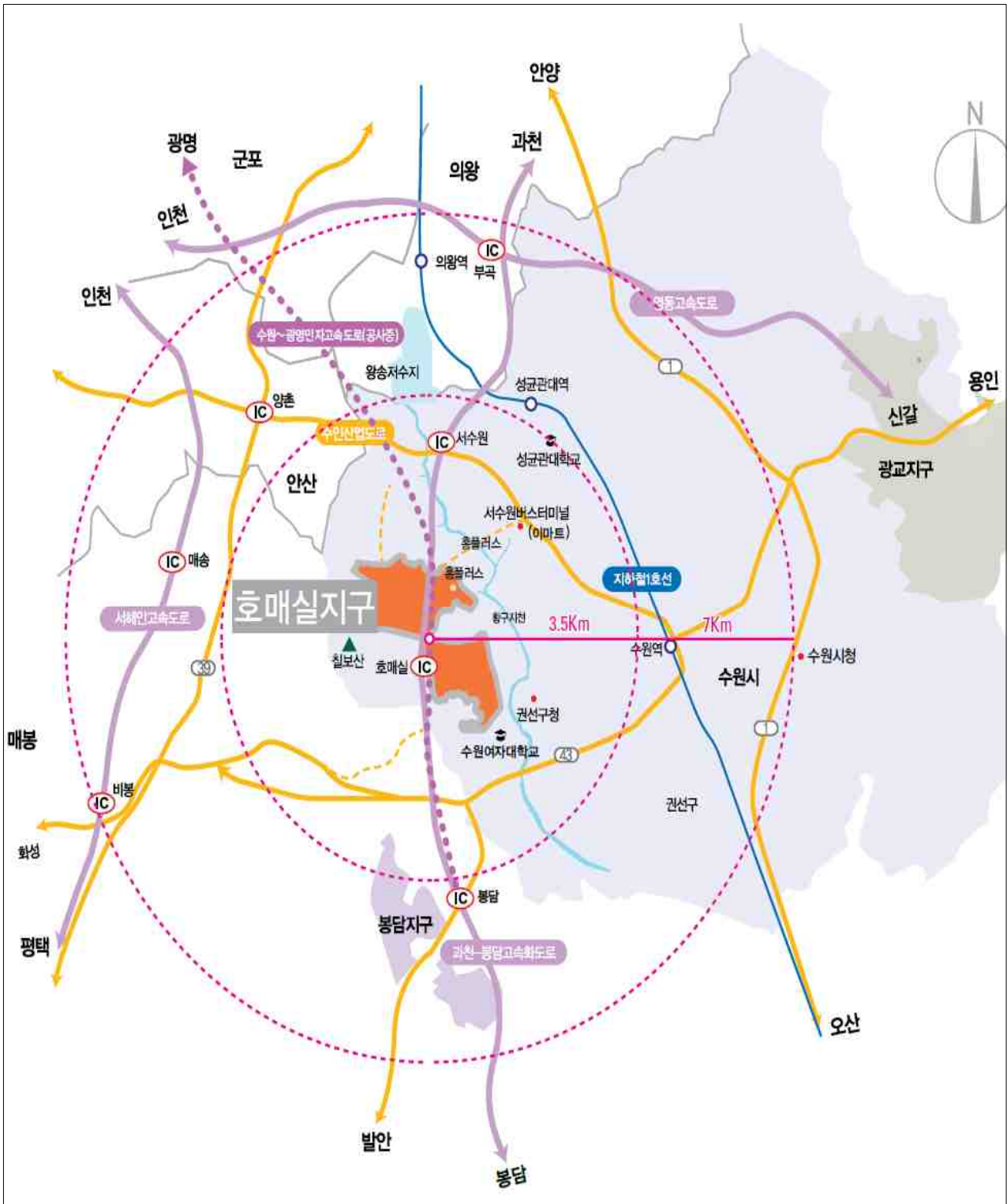
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, **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**하여야 함 (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)

- 신청자(본인)의 인감증명서 1통(본인발급)
- 신청자(본인)의 인감도장
-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(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)
- 본인 및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 포함) 또는 여권사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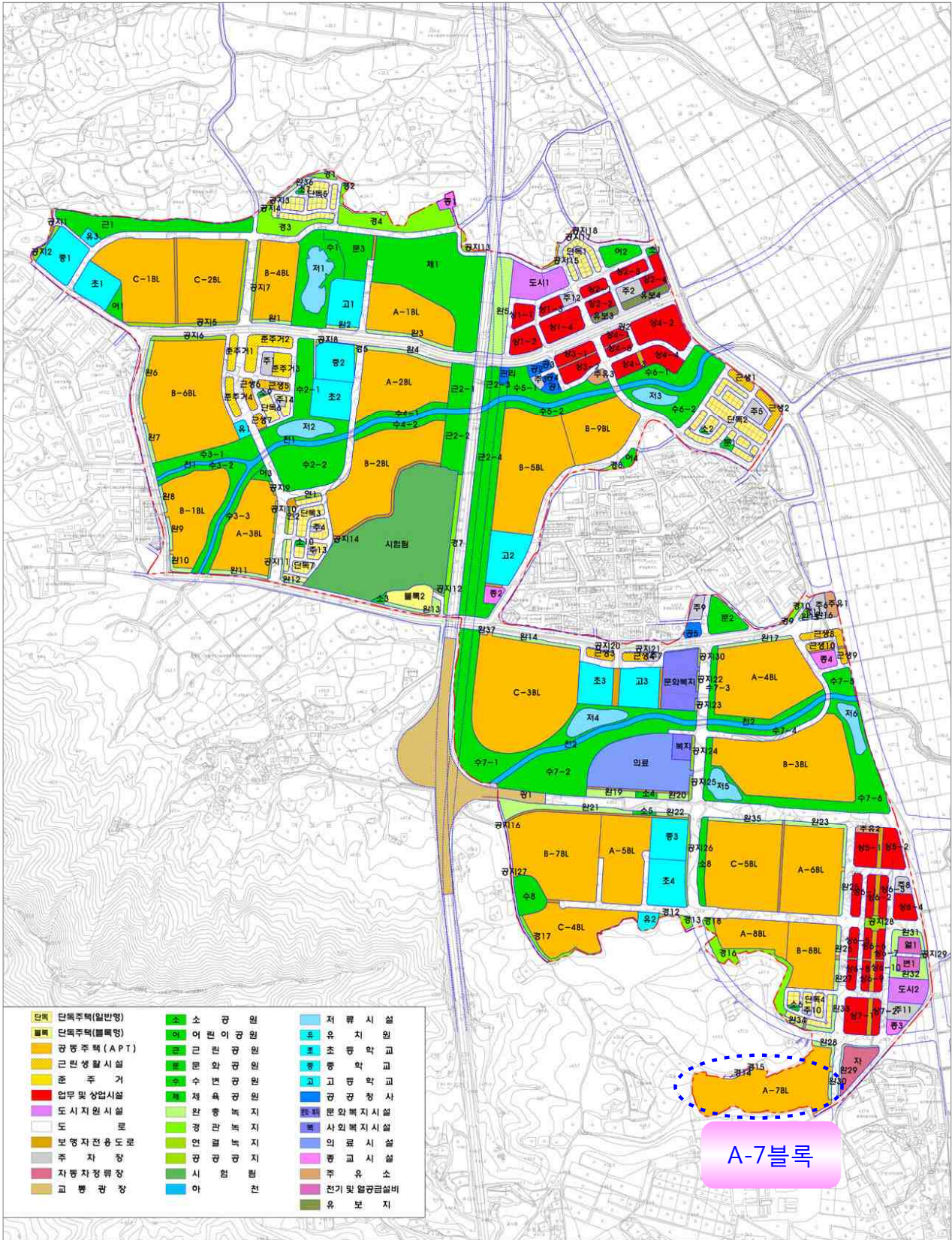
4. 기타사항
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일[2016.05.18(예정)]에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[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(호매실로 211)인근]에 방문하여 신청**하여야 합니다.**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)**
- 자세한 일정, 임대조건 등은 향후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 공고[2016.05.12(예정)]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, 1인 중복청약, 세대원 중복 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.[계약체결 불가,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]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, 동·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,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
-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(계약자의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함)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, 청각장애인, 시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,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,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.
 - 설치항목 : 입주자모집공고[2016.05.12(예정)] 확인요망
 - 신청시기 :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(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불가함)
 - 신청시 구비서류 : ①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

5. 위치도



6. 토지이용계획도



7. 청약 및 분양상담

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

- 청약 · 분양상담 (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內)
- 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(호매실로 211) 인근

- 전화 문의
- LH 콜센터 : 1600-1004
- LH 경기지역본부 : 031-250-8351

※ 주택홍보관에 59A형의 견본주택 건립중으로, 단지모형 관람 및 상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가능합니다.